



Hemet 시 관리 정책:

주거 유틸리티 계정 수도공급 중단 정책

제목:

본 정책은 Hemet 시 유틸리티 고객에게 자신의 유틸리티 계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통보합니다. 본 정책은 연체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 수도가 끊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대체 납부 수단을 요청하는 방법, 고객 권리, 수도 차단 수수료 및 소득 인정 고객이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적:

본 정책은 SB998 및 Hemet 시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정책은 청구 및 징수 절차, 체납 시 수도공급 중단을 방지하는 방법 및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득 인정 고객이 수도공급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청구 절차:

Hemet 시는 매월 공과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Municipal Code 1984 - 14205 Sec. 82-77에 따라, 공과금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서를 발송할 때 지불해야 하며, 15일 후에는 연체됩니다.

징수 절차:

SB998에 따라 주거 계정은 연체 60일 후에 서비스가 중단되며, 늦어도 서비스 중단 7일 전까지 중단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SB998에 따라 중단 통지에는 마감일, 연체료, 시의 연락처 및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우편 주소와 서비스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거주자에게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입주자"에게 후속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계정의 소유자 이름, 체납액, 납기일,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시에서 고객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서비스 중단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시는 분홍색 태그를 부착하여 체납액, 납기일 및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거주자에게 통지합니다.

시는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SB998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7일 더 많은 15일 전까지(평일 기준)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고객에게 발송합니다. 중단 통지가 작성되면 고객은 5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 수수료는 연체금과 함께 지불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대체 납부 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의 제기 절차:

고객 또는 성인 거주자는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시는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 후, 신청서 접수 후 평일 기준 **3일** 내에 고객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 인정 고객

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공급을 차단할 경우 거주자의 삶이 위협을 받거나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 받아 제출하는 경우
- 고객이 소득 인정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 고객이 대체 납부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 납부 계획/연장: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득 인정 고객의 경우에는 대체 납부 또는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간 1회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대체 납부/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시에서 고객이 미납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중단을 피하려면 대체 납부 약정에 따라 추후 청구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합의된 대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서비스 중단 **5일** 전에 중단 통지를 게시하고 **50달러**의 통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객이 추후 청구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60일** 후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재연결 요금:

Hemet 시는 정규 업무 시간에는 **75.00달러**의 재연결 수수료를, 비정규 업무 시간에는 **230달러**의 재연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재연결 수수료를 정규 업무 시간 동안 **50달러**로 제한합니다. 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

고객이 저소득이며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수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경우 소득 인정 대상이 됩니다. **CalWORKs, CalFresh, Medi-Cal,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추가 보안 소득/주 보조 지불 프로그램),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입주자:

Hemet 시는 수도 차단 **15일** 전에 다세대 주택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처음 **3명**의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데는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그 후에는 추가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데는 각각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자는 계정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통보 받게 됩니다. 모든 입주자는 소유자의 연체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계정 소유자가 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체납액을 면제 받으려면 계정 소유자가 되는 입주자가 해당 체납액이 해당 집주인과 관리자 또는 부동산업자의 소유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고:

Hemet 시는 해당 연도의 서비스 중단 건수를 보고하고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시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매주 업데이트됩니다.

Hemet 시 웹 사이트는 주거지의 모든 서비스 중단을 보고하고 본 정책의 사본을 보유하게 됩니다.

951-765-2350

.